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공중위생업 시설기준 - 이용업	3
이용업	3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3
시설기준	3
영업자 준수사항	3
목욕실 등의 청결 및 수질관리	3

공중위생업 시설기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위생업소현황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 · 숙박업 · 세탁업 · 건물위생관리업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시설기준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영업자 준수사항

☞ 목욕실 등의 청결 및 수질관리

1. 이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2.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5.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6. 마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3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7. 3가지 이상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GANGJIN

Web Contents

